

제193회 제2차 정례회  
광진구의회

**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 
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서**



2015. 11. 26.

**복지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**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1218호
----------	--------

2015. 11. 26.  
복지건설위원회

**1. 제 안 자** : 광진구청장

## 2. 개정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구체화하고,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훈련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구체화(안 제5조) “위탁기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 를 “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” 로 개정
- 나.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지원 관련규정 신설(안 제7조제2항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입법예고(2015. 10. 14. ~ 11. 2.) 결과 : 의견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구체화하고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성은 물론 업무교육 및 훈련 등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, 2015년 11월 10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  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조례안 제5조(위탁기간) “위탁기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 를 “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” 로 변경하여 위탁기간을 구체화하였으며,
  
  - 관련법 및 조례를 살펴보면,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의하면 “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” 라고 되어 있음.
  
  - 이 조례의 해당시설은 중곡, 자양,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이며, 이중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은 금년 1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됨.
  
  - 조례안 제7조(지원)제2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과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.

## 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복지시설 위탁기간을 구체화하여 사회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통하여,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며,
- 또한 최근 복지 수요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교육 및 훈련 등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, 복지시설이 지역복지의 중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- 본 조례안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비·보완하는 것으로 일부개정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